

감 사 원

주의요구 · 통보(시정완료)

제 목 전문직 특1급 본부장급 직원 채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기도시공사

조 치 기 관 경기도시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시공사는 2015. 5. 26. 전문직 특1급 본부장급 직원 공개채용을 위한 채용 공고를 한 후 서류전형(6. 12.)과 면접시험(6. 17.)을 거쳐 같은 해 6. 19. AA을 전문직 특1급(본부장) 공개채용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위 공사의 채용공고에 따르면 전문직 특1급 본부장급 직원의 자격요건은 1. 상장 기업체 임원급 이상 3년 이상 재직, 2. 공무원 3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3. 국가 및 경기도 투자기관 임원급 이상 1년 이상 근무경력, 4. 정교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9년 이상 연구 경력자, 5.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응시자는 지원서와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가 서류전형 시 응시자의 자격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응시자가 지원서에 경력으로 기재하였더라도 관련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하고, 자격요건 제5호(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응시자의 경력증명서상 직위가 기업체 임원급인지 또는 직원급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직위의 근무경력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격요건과 동등한 자격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위 AA은 10년간 ㉡㉡주식회사 외 2개 회사의 이사와 상무로, 7년 9개월간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지원서에 관련 경력을 기재하고서 경력증명서는 ♥♥ 관련 사항만 제출하였다.

한편,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27. ~ 4. 28.) 중 AA의 ♥♥ 경력 사항을 확인한 결과, AA은 직원급⁴⁷⁾인 부장, 전문위원으로만 재직하였을 뿐 임원급⁴⁸⁾ 경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인사관리규정」에 '이사' 직위가 없는데도 재직 당시에 전문위원을 '이사'로 호칭⁴⁹⁾하였다는 사유로 ♥♥에 자신이 7년 9개월 동안 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위 공사는 ♥♥ 근무경력과 관련하여 지원서 내용의 사실 여부나 '이사' 직위가 임원급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AA이 임원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경기도시공사의 채용 업무 담당자 ○처 ○부 AB과 팀장 AC은 ㉡㉡주식회사 외 2개 회사의 근무경력과 관련하여 AA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경력증명서

47) ♥♥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직원의 직위는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전문위원, 이사부장으로 구분

48) ♥♥ 「임원관리규정」에 따라 임원은 상무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49) ♥♥은 전문위원 이상 직원을 '이사'로 호칭하고 있으나 이는 「인사관리규정」상 정식 직위에 해당하지 않음

도 요구하지 아니한 채 10년 간 이사와 상무로 재직한 것으로 인정하고 서류전형 자료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는 AA이 17년 9개월 간 비상장회사의 임원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인정하여 채용공고 상 자격요건 제5호(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 자격요건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서류전형에 합격 처리한 후 면접시험을 거쳐 2015. 6. 19.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시공사는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채용업무 시 경력조회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에서 2017. 4. 30. AA을 면직하는 내용으로 조치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통보(시정완료)]

②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 직원 채용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관리직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기도시공사

조 치 기 관 경기도시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시공사는 「보수규정」 제26조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초과근무수당⁵²⁾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르면 기관장의 위임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자⁵³⁾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공사의 「직제규정」 제29조 제2항,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및 「위임전결규정」 제5조 [붙임 1]의 규정에 따르면 부장 보직자(2~3급)는 사장으로부터

52)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포함

53)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는 2급이상 상위직 관리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2017. 4. 14. 공기업지원과-563)에 따르면 명목 직급과 관계없이 직책수행비를 지급받고,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면서 휴가신청을 승인하는 등 관리자의 업무⁵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사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면서 직책수행비⁵⁵⁾를 지급받고 있는 부장 보직자를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위 공사는 「보수규정」 제26조의2에 일반직 2급 이상 보직자에게만 관리 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3급 이하 직원에게는 보직에 관계없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위 공사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3월 현재까지 ■부장 AL 등 89명의 3급 부장 보직자⁵⁶⁾에게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고도 별도로 계 930백만여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시공사는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부장 보직자를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관리자에 해당되어 별도로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고 있는 부장 보직자를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54) 부장 보직자는 4급 이하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직무역량 평정자, 직무성과 1차 평정자)업무를 수행

55) 「북리후생규정」제7조 제2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부장 보직자에게 월 200,000원의 직책수행비를 지급

56) 2014년 47명, 2015년 46명, 2016년 59명, 2017년 69명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관리직 인력 과다 운용

소 관 기 관 경기도시공사

조 치 기 관 경기도시공사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시공사는 「직제규정」 등에 따라 본부-처(실·단)-부를 기본구조로 사장, 이사, 감사 및 직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임원은 이사·감사로, 이사는 사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임이사는 본부장으로 보하도록 조직 및 인력을 설계·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 제3장 지방공기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기관의 건전경영 실현을 위한 최소인력 유지를 위해 관리직(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 임직원) 비율을 정원의 2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위 운영기준에 과장을 관리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통상적으로 과장이 관리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리직으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과장이 기관장의 위임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지 않다면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위 공사의 「직제규정」 제29조 제2항 및 「위임전결규정」 제5조

[붙임 1]의 규정에 따라 부장급(팀장⁵⁷⁾ 포함) 이상 임직원이 사장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사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장급 이상 임직원(관리직) 현원을 직제규정상 정원(482명)의 20%에 해당하는 97명 이내로 운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위 공사는 2017년 4월 감사원 감사일 현재 정규조직⁵⁸⁾ 외에 [표]와 같이 도시금융사업단 등 5개 임시조직을 신설, 10명의 부장급 이상 관리직 직원을 두어 총 105명을 관리직 현원으로 운용함으로써 운영기준상 정원보다 8명을 초과 운영하였다.

[표] 관리직 현원

(단위:명)

조직	정규조직 현원				임시조직 현원			총계
	임원(급) ⁵⁷⁾	처장	부장	소계	단장	부장(팀장)	소계	
사장, 감사, 5본부, 1실·12 처·7단, 71부	7	20	68	95	4	6	10	105 (21.8%)
					2017.1.9.신설 도시금융사업단 ²⁾	금융주택/금융개발부		
					2017.1.9.신설 임대주택관리 자회사준비단 ³⁾	-		
					2017.2.20.신설 융합타운건설단	융합타운기획도청사업팀부		
					2017.2.20.신설 군공항개발 추진단 ⁴⁾	군공항기획부		
					-	2017.1.9.신설 법률지원팀		

주: 1. 본부장 3명은 전문직 특1급으로서 「직제규정」 정원표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급임

2. 2017. 3. 10. 변경 전 조직명은 '금융사업추진단'임

3. 임대주택관리자회사준비단의 부단장 2명은 직책수행비, 근무성적 평정 권한 등이 없어 제외

4. 2017. 3. 10. 변경 전 조직명은 '군공항이전지원단'임

자료: 경기도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경기도시공사는 2016년 12월 이후 발생한 신규사업

57) 팀장은 부장급에 해당하고 임시조직(T/F팀)에 법률지원팀장이 있음

58) 정규조직의 관리직 현원은 총 95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임시조직(T/F팀)을 구성함에 따라 관리직 10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상 관리직 상한을 8명 초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시조직은 위 공사의 「직제규정」에 따라 사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둘 수 있으며 긴급한 업무가 종료되는 대로 해체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조직의 건전경영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저해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업무가 종료되는 불특정 기한까지 적정 관리직 상한을 초과하는 인원 만큼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과소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직제규정」에 따라 사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임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 운영기준상 관리직 상한(정원의 20% 이내)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임시조직 설치가 상위직 증원을 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위 공사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서 정한 관리직 상한보다 과다하게 운용하고 있는 관리직 인력을 감축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